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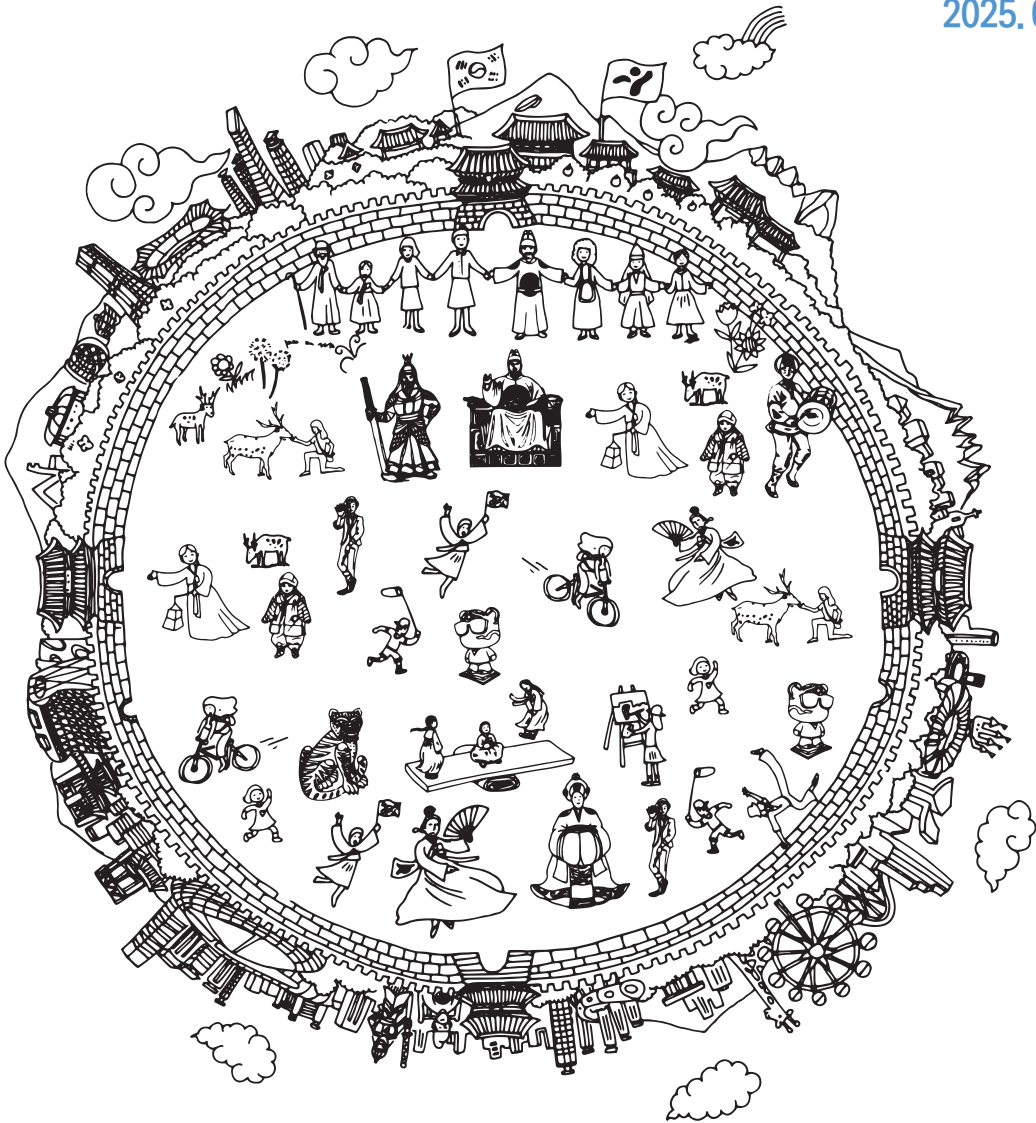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69호
2025. 6. 2.(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700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4701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제470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9
제4703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제470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제470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4

[훈 령]

제1063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30
--------	------------------------------	----

[예 규]

제742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34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0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장려금 지급
2. 시장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인 증서 수여
3. 그 밖에 우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의 지원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로 한다.

②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품목
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품목
3.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자산성 품목 중 업종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성 품목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매년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⑤ 시장은 지원 품목에 대한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요건 등을 규정함(제2조)
- 나. 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절차, 지원내용 등을 마련함(제3조)
- 다.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을 명시함(제4조)
- 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기준을 명시함(제5조)
- 마.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1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시설사용허가”를 “체육시설 사용허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부받고”를 “수납하고”로,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 하여야”를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로, “허가한 내용 대로”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체육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별표1부터 별표5”를 “별표 1부터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례 제10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사목, 제15조의3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의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중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프로그램·선전책자판매, 기타”를 “프로그램·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으로, “임시판매사용허가”를 “임시판매 허가”로, “물품 등”을 “물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시설사용료 중 별표1”을 “체육시설 사용료 중 별표 1”로 한다.

제4조의2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를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로, “경우를” 을 “시설을”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허가신청서” 를 “사용허가 신청 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람권 발행자” 를 “관람권 발행자” 로, “별표3” 을 “별표 3” 으로, “기본전용사용료” 를 “전용 사용료” 로, “체육이외” 를 “체육 이외”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폐기 하여야” 를 “폐기하여야” 로 한다.

제7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의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별지 제11호 서식” 을 “별지 제11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자” 라 함은” 을 “자”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 납부한” 을 “기납부한” 으로 한다.

제9조 중 “당해경기” 를 “당해 경기” 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자선정” 을 “수탁자 선정” 으로, “참여 할” 을 “참여할” 로 한다.

제11조 중 “관리·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 을 “관리·운영” 으로, “선정방법” 을 “선정 방법” 으로 한다.

제12조 중 “결정된” 을 “결정한”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위탁신청 등)” 을 “(관리·운영 위탁 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을 “관리·운영을” 로, “관리·운영위탁” 을 “관리·운영 위탁” 으로, “제출 하여야” 를 “제출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정리하여” 를 “확인·정리하고”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리·운영계약 등)” 을 “(관리·운영 계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정통지” 를 “선정 통지” 로,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를 “수탁관리·운영 계약(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한내” 를 “기한 내” 로, “포기 한” 을 “포기한”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한내” 를 “기한 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체결한자(이하” 를 “체결한 자(이하”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체육시설안” 을 “체육시설 안”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을 “(수탁운영기간의 연장 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운영기간연장신청서” 를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연장신청” 을 “기간연장 신청” 으로, “상정·심의” 를 “상정 후 심의”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 를 “체육시설 수탁자” 로, “이행여부” 를 “이행 여부” 로 한다.

제17조 중 “통지 하여야” 를 “통지하여야” 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23조제10호에 따른 운영위탁” 을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운영의 위탁” 으로, “사무는” 을 “사무” 는”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을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 8824호, 2023. 7. 18. 및 제9271호, 2024. 5. 20.)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감면율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을 지정할 경우 감면율과 함께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칙에 반영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변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 나.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 다.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을 “한다) 제9조의4제2항” 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한다)” 를 각각 “한정한다)” 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8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전의 제10항) 중 “「지방전문관 규정」 제6조제1호” 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로, “임용예정직무관련” 을 “임용예정 직무 관련” 으로 한다.

⑩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10” 을 “별표 10” 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을 “(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임용순위명부” 를 “승진임용 순위 명부” 로, “승진후보자명부” 를 “승진후보자 명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5급일반승진시험” 을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 으로, “작성하고” 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를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로 한다.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40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를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고” 로, “연구실적의 평가를” 을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로,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 를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을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 으로,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 를 “최초임용계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을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으로,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재직 기간은 별표 22의 해당 상당 계급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으로, “기간에 대하여” 를 “기간 중” 으로,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를 “범위이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 를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할 수” 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

조제3항”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으로, “전직임용하는”을 “전직 임용하는”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를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급상당 이상과 5급상당”을 “4급 상당 이상과 5급 상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별지 제14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제55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6호의2서식)

제58조제1항 중 “4급상당”을 “4급 상당”으로, “5급상당”을 “5급 상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또한, 근무실적”을 “또한, 근무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5”를 “별표 25”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제출 받”을 “제출받”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임용기관”을 각각 “근무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 완화

- 경력경쟁채용에서 경력인정 요건은 ‘퇴직 후 3년’ 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퇴직 후 10년’ 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까지 인정

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전출 제한 완화

- 현행 규정상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는 4년이 경과해야 타 지역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또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전출 제한 예외 대상으로 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상 내용 반영

라. 그 밖의 문구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3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7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을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로,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회계관리에 관하여”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소모품을 매입·제조·운반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자산취득비로 취득하는 비소모품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지방회계관리훈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시금고 -”를 “시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금고지출대행점 -”을 “시금고지출대행점:”으로, “금융기관 또는”을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따른 새마을금고”로, “의한 신용협동조합”을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공금지급대행점 -”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금융기관 및”을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

행”을 “따른 새마을금고”로, “의한 신용협동조합”을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23조제5항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호서식까지를”을 “별지 제40호서식, 제40호의1서식, 제41호서식, 제41호의1서식을”로 한다.

제33조 중 “산출하고”를 “예상가격을 산출하여 작성하고,”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이상 5천만원 이하”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 2억원 이하”를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계관계공무원 관직(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청	시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 · 임시관 서
			서울시립대학교	1,2,3급 소속관서	4급이하 소속관서	
회계책임관	재무국장	-	-	-	-	-
징수관	재무국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사무처장	행정처장	관서의 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일반회계는 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본부·국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	-	-	-	-
재무관	재무국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사무처장	행정처장	관서의 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관서의 장	-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및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로 한정함)	의정담당관, 실장·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재무과장, 각 과장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재무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각 부장 또는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각 과장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재무국장	-	-	-	-	-
채권관리관	각 실·본부·국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사무처장	행정처장	관서의 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임채권관리관	각 과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	각 과장	각 부장 또는 과장	-	-
총괄부채관리관	재정기획관	-	-	-	-	-
부채관리관	각 과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사무처장	행정처장 (분임부채관리관은 각 과장)	관서의 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분임부채관리관은 각 부장 또는 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	-	-	-	-

관 직 명	본청	시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 · 임시관 서
			서울시립대학교	1,2,3급 소속관서	4급이하 소속관서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	-	-	-	-
지출원	재무과 지출담당사무관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 지출담당소방령)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지출업무담당자	재무부서의 과장 · 지출업무담당사무 관, 담당자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재무담당과장 또는 지출담당자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
수입금출납원	일반회계는 세무과 세입총괄 담당사무관 · 시세징수업무 담당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 담당사무관,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세입업무담당자, 세외수입업무담당자	세입업무담당자, 세외수입업무담당자	세입 및 세외수입 담당 부서의 장 · 세입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사무관 · 세입 및 세외수입 담당자 중에 관서의 장이 지정	세입 및 세외수입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세입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단, 청도문서고는 회계담당자)	실 · 각 담당관 · 전문위원실 지출담당사무관	관서의 장이 지정	관서의 장이 지정	관서의 장이 지정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단, 소방재난본부의 장이 지정한 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 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 제1관서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4호)

※ 기타관서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5호)

[별표 2]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8조 관련)

1. 대상 경비별 재정합의 한도액

대상 경비	합의대상금액	
	재무과장	담당사무관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10억원 이상	건당 10억원 미만
용역 또는 제조	건당 5억원 이상	건당 5억원 미만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건당 5억원 이상	건당 5억원 미만
물품매입 및 기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은 제외)	건당 2억원 이상	건당 2억원 미만

2. 합의금액

가.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300만원 초과)

나.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합의방법

가. 합의권자가 재무과장인 경우

- 1)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2)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원인행위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나. 합의권자가 담당사무관인 경우

- 1)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는다.
- 2)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원인행위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는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市 규제 철폐 추진에 따른 증빙서류 간소화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반영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출 시 산출기초조사서 생략 기준 신설 등(제14조제2항, 제3항)
나. 재정보증금액 한도 상한 삭제(제45조제1항)
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중 수입금출납원 담당자 추가(별표 1)
라. 계약 시 재정합의 금액 기준 상향(별표 2)
마. 약칭 수정 등 기타 문구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를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수 받을”을 “인수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 그”를 “화재 또는 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재원인”을 “사고 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을 “경우 중 긴급하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교환)”을 “(시유재산의 교환)”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본청”을 “시 본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매매

계약서”를 “공유재산매매계약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통지·의견서”를 “사전 통지·의견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통지”를 “사전 통지”로 한다.

1. 변상금 사전 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

제38조제1항 전단 중 “소속행정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날인함으로서”를 “날인함으로써”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구입시”를 “구입 시”로, “날인함으로서”를 “날인함으로써”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물품증”을 “물품 증”으로, “물품운용관”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으로, “즉시”를 “즉시 물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를 “인수증을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를 “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물품을”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관리전환 하거”를 “관리전환하거”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따라서”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를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소속행정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9조 에”를 “제79조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인의 사용·수익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 지 목 :
 - 면 적 : m^2
2. 요구면적 : m^2
3. 매수가격 : 귀시 결정가격

위와 같이 재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년 일 일

주소 :

신청인 : (인)

주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공무원 여부 : ☐ 공무원(근무부서:) ☐ 해당없음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재산관리 종사 공무원) 재산관리관 및 공유재산 관리 사무 종사 공무원은 소관 부서의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시유재산 위임관리하는 자치구 담당자도 해당)
 - ▶ 다만,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 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그 밖의 공무원) 서울특별시시장의 공유재산(타 부서 재산 등)을 취득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 ▶ 신고내용 : 1) 취득 및 교환 사유, 2) 취득 및 교환 재산의 목록, 3) 취득 및 교환하려는 시기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수입증지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하면서 수허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른 공무원 매수자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서식에 부당한 조건 방지를 명시(별지 제9호서식)
- 나. ‘시유재산 매수신청서’에 신청자의 공무원 여부 확인란 등 추가(별지 제16호서식)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도시공간본부장이 되며”를 “균형발전본부장이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리자가 된다”를 “관리자를 맡는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비지매각의뢰토지명세서”를 “체비지 매각의뢰 토지명세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체비지매수신청서”를 “체비지 매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접지소유자”를 “인접지 소유자”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건설업자 단체”를 “건설업자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

- ⑤ 제2항에 따른 지장물 현황조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의한 명의변경신청서”를 “따른 명의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8조 중 “이전신청”을 “이전 신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급신청 :”

을 “발급 신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유자주소변경신청 :” 을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확인신청 :” 을 “소유자 확인 신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실확인신청 :” 을 “사실 확인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련공부” 를 “관련 공적 장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련공부” 를 “관련 공적 장부” 로, “대부료부” 를 “대부료 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비지대부신청서” 를 “체비지 대부 신청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비지대부계약” 을 “체비지 대부계약” 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체비지총괄대장” 을 “체비지 총괄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비지매각대장” 을 “체비지 매각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비지매각총괄대장” 을 “체비지 매각 총괄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체비지대부정리부” 를 “체비지 대부 정리부”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 을 “체비지 대부계약 처리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체비지대부료징수부” 를 “체비지 대부료 징수부”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 을 “변상금 부과징수 처리대장”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				처리기간 1 일
양 수 인	성 명 (명 칭)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양 도 인	성 명 (명 칭)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재 산 의 표 시		구역 구	구획 동	호 번지
체비지 m² 호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시 발행) 3.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양수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안 내 문

제 목 : 점유채비지 대부계약 체결

수 신 : 구 동 번지 귀하

1. 귀하께서 현재 점유 사용하고 계신 구 동 번지 호 (면적 : m²)는 ○ ○도시개발사업구역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채비지이므로 조속히 매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매수가 어려우시면 20 . . .까지 우리구 과에 오시어 대부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채비지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20 . . .

○ ○ 구 청 장

[별지 제19호서식]

체비지 대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 :
- 면 적 :

○ 대부기간 :

○ 대부목적 :

○ 대 부 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조건 : 귀 구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별지 제8호서식 및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 나. 조직개편에 따라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를 ‘도시공간본부장’에서 ‘균형발전본부장’으로 변경(제2조)
- 다.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1063호****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국외훈련” 을 “교육훈련”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1)부시장” 을 각각 “행정1부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를 “위원회의 회의” 로 한다.

제8조 중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을 “경미한” 으로, “단순한 기간의” 를 “6개월 미만의 단순한 기간”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한 자” 를 “경과한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 50세 이하의 자” 를 “50세 이하의 사람” 으로, “만 53세” 를 “53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만55세 이하의 자” 를 “55세 이하의 사람”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훈련공무원이” 를 “훈련대상자가” 로, “당면과제” 를 “당면 정책 과제”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대한” 을 “대한 장기” 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 “취하여야 한다” 를 “취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국외훈련자” 를 “훈련대상자” 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훈련계획” 을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계획” 으로, “하거” 를 “필요하거” 로, “달성 할” 을 “달성할”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훈련중단 조치를 취” 를 “훈련중단을 결정”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선발된 훈련대상자” 를 “훈련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발된 훈련대상자” 를 “훈련대상자” 로, “직계존속” 을 “직계존속 1인” 으로, “지급 받고자” 를 “지급받고자”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② 훈련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원칙상 미혼인 자녀에 한정한다) 또는 직계존속 1인(훈련대상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제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2등 정액 항공요금을 지급한다.

제32조의 제목 “(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을 “(훈련국가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련국을” 을 “훈련국가를” 로, “이동시” 를 “이동 시” 로, “1회에 한하여” 를 “한 번만” 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을 “송금 당일의 전신환매도율(해외 송금 시” 로, “지급당일” 을 “지급 당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 하되” 를 “지급 하되” 로, “방식에 따” 를 “방식에 따” 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실제귀국일)” 을 “실제 최종 귀국일)” 로, “파견종료일은” 을 “파견종료일을 포함하여” 로 한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를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으로, “제5호” 를 “제5호, 제6호” 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과 영” 을 “법령” 으로, “ ‘보험업법’ ” 를 “ 「보험업법」 ” 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 을 “제2항” 으로, “승인 할” 을 “승인할” 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과 규정” 을 “법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도말” 을 “연도 말”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체” 를 “일절” 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규정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 정비 및 관련 항목에 대한 상위 법령 기준 적용

2. 주요내용

- 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함
- 나. ‘동일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파견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동일공무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 파견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함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 제742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부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 ② 부계약자는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24조제12항 중 “제10항의 적정임금”을 “제11항의 적정임금”으로, “제10항의 의무”를 “제11항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0항 또는 제11항”을 “제11항 또는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용한 건설공사 직접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에게 해당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한 제20조의3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 내용을 반영함. 아울러 기타 정비가 필요한 제20조 및 제24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조항 개정 (제20조의 3)

나. 기타 조항 정비 (제20조 제4항, 제24조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 및 제17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